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 2차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명)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
- (공고기간) '25. 4. 29.(화) ~ 5. 15.(목) 15:00
- (공모기간) '25. 4. 29.(화) ~ 5. 15.(목) 15:00
- (지원규모) 총 3억원, 4개 내외 단체 지원

□ 공모내용

- (지원대상) '25년 국내에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는 민간 단체
 -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사업기간) '25. 5월 ~ '26. 2월
- (지원금액) 단체당 5천만원~1억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공모유형) 국제형·활성화형·장르특화형

구분	지원 규모	지원 자격	지원신청 가능금액
국제형	1건 내외	국내에서 국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는 민간단체 * 참여 부스 규모가 100개 이상이며 해외 갤러리 참여비중이 20% 이상인 아트페어	1억 5천만원
활성화형	1건 내외	국내에서 아트페어를 기획·개최·운영하는 민간단체	5천만원
장르 특화형	2건 내외	회화 이외의 미술 장르(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등) 작품 유통을 목적으로 기획된 아트페어 * 장르 특화형 아트페어 기획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예)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작가 및 화랑의 참가자격을 특정 장르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등	5천만원

※ 상기 공모 유형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공모 유형별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선정 후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지원이 취소 혹은 축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정체성·차별성 확보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운영과 아트페어의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구분	지원 내용 상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아트페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 특별전 및 미술기관 협력 프로그램 등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그램 - 토크, 도슨트, VIP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작품 판매 및 모객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 아트페어 홍보·마케팅 활동비 지원 - 온라인 뷰잉룸 제작, 유튜브 송출, 언론 홍보 기획 등
국제화 프로그램	• 국제 미술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 해외 미술시장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세미나 - 한국 미술 및 작가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한국 미술 특별 전시 - 해외 초청인사 VIP 프로그램

※ 아트페어 개최 기간 내에 행사장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 공공지원 목적에 맞는 내용에 한하여 지원 예정이며, 필요시 공모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지원 내용을 결정함

□ 주요사항

지원 불가 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부대비용 :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지원 자격 제외 대상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또는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교육 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③ 아트페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협조
 - 센터가 별도 용역을 운영하며,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조사 부스 및 출입증(모니터링용 티켓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조사 분석을 통해 아트페어별 구매자 특성, 만족도 정보 등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④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아트페어 성과(판매액, 관람객수 등) 요청 정보 제출
- ⑤ 모든 홍보물·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 ⑦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⑧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성과 공유회, 회계교육 참석
- ⑨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유의사항

-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참여 부스 수, 개최 장소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사례비(아티스트피)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공모 접수

- 신청기간 : 4. 29.(화) ~ 5. 15.(목) 15:00
-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 공모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를 권장함
 - ※ 반드시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단계	제출방식	제출서류
서류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예산 계획서 작성	① 지원신청서(지정 양식, 필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 →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 >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필수) ③ 과거 아트페어 운영 및 실적 증명 자료(필수) ④ 장르 특화형 아트페어 기획·운영 증빙 서류(해당시 필수)
면접	담당자 이메일 제출	면접 심의를 위한 PPT 제출 ※ 서류심의 이후 별도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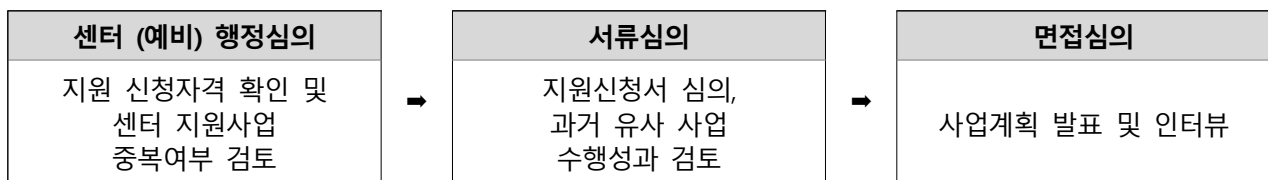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참여단체 2차 공모>검색>신청서 작성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 본 지원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의
- 심의절차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지표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10%	공모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기획의 부합성(5)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및 구체성(5)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15%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의 지속성·안전성(5)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조직구성 여부(5)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내·외부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절성(5)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프로그램 기획력	30%	프로그램 기획의 차별성·참신성·다양성(10) 사업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홍보·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공간 계획의 타당성 및 장소의 적합성(5)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5)
			사업 규모 대비 예산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5) 재원조성 계획의 수립 정도 및 실현가능성(10)
	재원 활용 계획의 적절성	25%	
	기대효과	20%	프로그램이 해당 아트페어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중장기 기대 효과(10) 국내 미술시장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정도(10)

○ 선정결과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관련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 (이메일) ji24@gokams.or.kr

※ 공모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이용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